

서울교육대학교와 (사)한국스내그골프협회 및 (주)바이스앤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(사)한국스내그골프협회 및 (주)바이스앤(이하 '각 기관'이라 한다)은 각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 및 스포츠 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분야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학교 교육을 위한 체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2. 스포츠 교육과 관련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3. 건강한 스포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
4. 스내그골프(Starting New At Golf)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연수, 교육 활동 등 협의 및 운영
5. 기타 각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약의 개정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각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
2.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
3.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
4.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제4조(비밀 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

② 다만 협약 만기일 30일 전에 협약 기관 전원 합의에 따라 1년씩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,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다.

서울교육대학교와 (사)한국스내그골프협회 및 (주)바이스앤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4월 28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(사)한국스내그골프협회

회장 김형달

김형달

WISE N

(주)바이스앤

대표이사 인승철

인승철